
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이해

2019. 2.

국무조정실

순서

I. 추진 배경	1
II. 추진 경과	2
III. 주요 내용	3
IV. 주요 안내 사항	6

I. 추진 배경

1. 필요성

- 現 규제 체계로는 신기술이 촉발하는 거대한 변화 수용에 한계
 - 신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,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혁신성장 저해 우려(The pacing problem, Deloitte)

“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트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...” - '18.10.8일 국무회의시 대통령 말씀 -

- 신기술·신산업의 혁신성·안전성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現 의사결정 구조*로는 적극적 의사결정에 애로

*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기보다 예측·주장에 따른 규제 고수와 철폐간의 논의 구조

“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릅니다...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...” - '19.2.12일 국무회의시 대통령 말씀 -

- 이에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(17.9월)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결정

2. 개념

-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, 신기술·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下 (시간·장소·규모)에서 규제를 면제·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

*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(sandbox)에서 유래

- **(새로운 기회 창출)** 국민의 생명·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
- **(불확실성 해소)** 새로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혁신성·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

II. 추진 경과

1. 주요국 도입 현황

- 20여개 국이 규제 샌드박스 이미 도입(11개국) 또는 도입 중(9개국)
 - * 기존 도입 국가: 영국, 싱가포르, 호주, 일본, 캐나다, 홍콩 등
 - 도입 추진 중인 국가: 미국, 스위스, 네덜란드, 대만, 두바이 등
- 핀테크 활성화 위해 '16년 영국^①에서 규제 샌드박스 최초 도입 이후 주요국도 금융분야 중심^②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
 - ① 年 2회 공모·접수('16.6월 1차 공모), 年 130~150건 접수 후 40여건 승인
 - ② 금융 분야 우선 시행 이유: 금융규제의 복잡성,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 우려 등
- 일본이 실물경제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('18.12월 2건)한 가운데, 호주·싱가포르 등도 에너지·로봇 등의 분야까지 확대 검토 중

2. 진행 상황

- 주요국과 비교 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적 기반 구축 후 단계적 시행 중
- **(입법 경과)** '18.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"1+4법"^{*} 발의
 - ① 행정규제기본법: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기본방향과 원칙 규정
 - ② 개별 4법: 분야별 규제특례 부여 방식과 사후책임 확보방안 등 규정
 -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1.17일부터 시행 중
 - 금융혁신법(4.1일)과 지역특구법(4.17일)은 4월 순차 시행 예정
- **(후속 조치)** 법 시행 한 달 이내 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사례 확정
 - * (산업부) 수소충전소 등 4건, (과기부)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등 3건
 - 금융혁신 분야는 사전 수요조사 실시·검토 중이며, 지역특구법은 하위 법령 입법예고 완료 후 부처협의 및 시·도 컨설팅 진행 중

Ⅲ. 주요 내용

1. 추진 체계

-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제도 주관부처·규제 소관부처간 역할 분담
 - **(국무조정실)** 규제 샌드박스 제도 총괄 및 관계부처 TF* 운영
 - * (팀장)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, (팀원) 4법 담당 부처 국장 및 관계기관
 - **(제도 주관부처)** 분야별 4개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운영* 및 규제 소관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·평가 추진
 - * 상담·안내·컨설팅, 부처 협의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운영, 기타 정책지원 등
 - **(규제 소관부처)** 규제 특례 협의, 사후 관리 및 규제 정비 추진



2. 규제혁신 3종 세트

(1) 규제 신속확인

- **(개념)** 신제품·서비스 시장 출시를 위해 사업자가 규제 존재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도 주관부처에 문의하여 회신 받는 제도
 - 제도 주관부처가 소관 외 규제 사항도 총괄하여 확인·회신
- **(효력)** 규제 소관부처에서 30일 이내 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

신속확인 신청

중앙행정기관/
지자체 통보

30일 이내 의견 회신

신속확인 결과 통보

사업자

→

4개 부처*

→

관계 행정기관

→

4개 부처

→

사업자

* 지역특구법은 사업자가 시·도에 신청 → 중기부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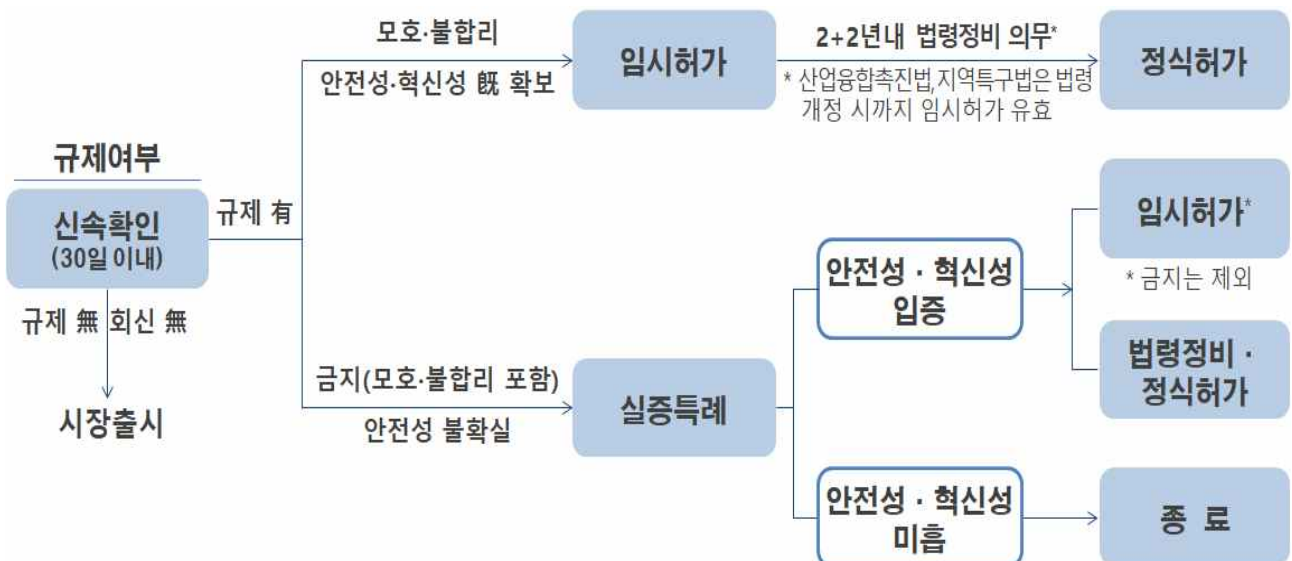
[2] 임시허가

- **(개념)** 안전성이 검증된 신제품·서비스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‘先 출시허용, 後 정식허가’ 제도
- **(효력)**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임시허가를 통해 조기출시 가능
 - * 다만, 관련 법령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임시허가 적용 불가
- 최대 4년(최초 2년, 2년 연장 가능)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, 규제 소관부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내 관련 법령 정비의무 발생
 - *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상 임시허가는 관련 법령 개정 시까지 임시허가 유효

[3] 실증특례

- **(개념)** 신제품·서비스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필요시 기존 규제 불구, 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해주는 ‘우선 시험·검증’ 제도
- **(효력)** 관련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증특례 가능
 - 최대 4년(최초 2년, 2년 연장 가능)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, 실증특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 정비 추진
 - * 관련 법령 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 가능(금지는 제외)

< 규제 혁신 3종 세트간 관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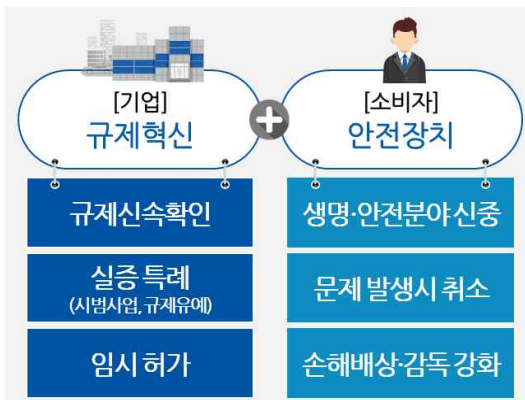
3. 안전장치 3종 세트

- 국민의 생명과 안전·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규제특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배상책임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
 - **(생명·안전 검토)**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시 국민의 생명·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 후, 우려 시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
 - **(문제 시 즉시 대응)** 규제특례 기간 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 발생 또는 예상 시 즉시 규제특례 취소 추진
 - **(배상책임 강화)**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, 고의·과실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 강화

4. 기대 효과

- 기업·소비자·규제당국 모두에게 이로운(win-win) 제도
 - **(기업)**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혁신·혁신 창업 촉진에 유리
 - 특히,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시행한 영국의 사례*를 참조할 경우 동 제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측면
 - * 1년간('16.6~'17.5) 실증 테스트 기업 42개사 중 39개사가 스타트업·중소기업에 해당
 - **(소비자)** 혁신 제품·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 및 편리성 향상
 - **(규제당국)**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 가능

혁신과 안전의 균형



기대 효과



IV. 주요 안내사항

① 사전 상담·안내 서비스 관련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?

- 각 부처는 상담·안내 등 위해 전담 위탁기관 지정·운영 중
→ 전화·이메일·방문 상담 모두 가능

- ① (과기부)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043-931-1000, 1004
- ② (산업부) 산업기술진흥원, 02-6009-4092, 4098
- ③ (금융위) 핀테크지원센터, 070-8873-9005 / (중기부) 지방중기청·산업기술진흥원

- 또한, 규제 샌드박스 세부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* (국조실) www.better.go.kr, (과기부) www.sandbox.or.kr, (산업부) www.sandbox.kiat.or.kr
(금융위) www.fintechcenter.or.kr, (중기부) 준비 중

② 구체적인 「신청 - 심의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**(신청)** 사업자가 분야별 전담 위탁기관에 신청·접수

- 분야 구분 모호 시 4법 담당부처 어디에도 문의·신청 가능
→ 이후 절차는 접수 기관이 분야 안내 및 진행

- **(심의)** 전문 분과위^①에서 쟁점 협의·조정 후 민간 전문가가 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·의결^②

- ① 신청 기업 및 관계 부처,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토론 및 협의·조정
- ②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되, 합의안 도출 애로 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



③ 신청부터 최종 확정 시까지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
- 신청·접수 후 심의·의결까지 **최대 3개월 내** 신속 추진 원칙
 - * 법정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(30일 이내) 후 분과위·규제특례심의위 신속 개최
 - * 영국의 경우 접수 후 통상 6개월 내외 심사기간 소요
- 향후 **화상회의·컨퍼런스콜** 등을 **활성화**하여 신청부터 심의·의결까지 기간을 **최대한 단축**해 나갈 예정

④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무엇인가요?

- 「신청 - 심의 - 실증 - 사업화」 **全流程 맞춤형 정책지원** 추진
 - **(신청)** 사전 상담센터에서 **1:1 법률·기술 자문** 등 실시
 - **(심의)** 신청기업이 참여하는 분과위 **활성화** → 심의 내실화
 - **(실증)** 실증특례 **비용^①** 및 **책임보험 가입^②** 지원
 - ① 시제품 제작, 시험·검증 데이터 분석 등에 **기업 당 최대 1.2억원** 지원
 - ② 책임보험료 **50%, 최대 1,500만원** 지원
 - **(사업화)**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(Scale-up)할 수 있도록 **벤처·중소기업 지원 정책수단과 연계**

⑤ 중복신청, 재신청 등이 가능한가요?

- **(중복 신청)** 제도운영 효율성을 위해 **개별기업 한 개의 사례는 한 부처에만 신청 가능**(동일 사례로 여러 부처 중복 신청 불가)
- **(재신청)** 규제특례 부결 시 **사업계획 등을 보완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을 개선**하였을 경우에는 **재신청 가능**
- **(유사 신청)** 혁신·소비자 보호역량 등에 대해 **기업별 심사 원칙** → 타 기업 유사 사례 샌드박스 적용 불구, **별도 신청 필요**